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4. 12.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8. 4. 4. 이필례 의원 외 8명
- 나. 회부일자 : 2018. 4. 5.
- 다. 상정일자 : 제21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18.4.1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이필례 의원

가. 제안이유

영유아 보육 등에 필요한 시설인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구립어린이집”을 안정적·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탁 또는 재위탁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
(안 제13조 제3항 개정)
- 2) “구립어린이집”의 재위탁 기간을 “3년 이내”에서 최초 위탁기간 범위인
“5년 이내”로 변경
(안 제22조 제2항 개정)

3. 검토보고 (이주현 전문위원)

- 이필레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2018. 4. 4.일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상위 법령인 “영유아 보육법” 에 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위임된 사무에 해당되므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위탁기간 또는 재위탁 기간을 조례 개정을 통해 변경하는 것은 법규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보육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가 위탁 또는 재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추세임.
- 따라서, 우리 마포구도 좀 더 향상된 가정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 어린이집” 의 위탁 또는 재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장기간 위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법규 준수 여부 및 위탁계약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좀 더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필레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8-32 |
|----------|-------|

발의년월일 : 2018. 4. 3.

발 의 자 : 이필레, 백남환, 신종갑
김영미, 차재홍, 서종수
송병길, 전승학, 강희향

1. 개정이유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재위탁 기간을 5년으로 통일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함으로써, 수탁자의 운영 안정을 도모하고 시설 운영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

(안 제13조제3항)

나. 구립어린이집의 재위탁 기간 “3년”을 삭제하여 최초 위탁기간 5년 범위에서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제2항)

3. 관계법규 : 『영유아보육법』 등

4.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8. 4. 3. ~ 2018. 4. 9.

나.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1부.